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최근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진입 및 1가정 1인 출산을 추세에 맞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지원으로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

### 2. 주요내용

가. 출생순위별 출산양육지원금 차등 지원확대 및 최대 1,000만원 지원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이상
현 행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개 정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나. 지원기준

- 1)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아동의 부모
- 2) 12개월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된 후에 지원

### 라. 지원시기

- 조례 공포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 조례 공포일 전 출생하는 신생아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08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  
보육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여성보육과, 전화 : 02-3396  
-5431, 팩스 : 02-3396-8739, email : khh6100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출산양육 지원기준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게 적용하며,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별표 기준	
	첫째 아이 200,000원	첫째 아이 1,000,000원
	둘째 아이 1,000,000원	둘째 아이 2,000,000원
	셋째 아이 2,000,000원	셋째 아이 3,000,000원
	넷째 아이 3,000,000원	넷째 아이 5,000,000원
	다섯째 아이 이상 5,000,000원	다섯째 아이 이상 10,000,000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첫째 아이	1,000,000	
둘째 아이	2,000,000	
셋째 아이	3,000,000	
넷째 아이	5,000,000	
다섯째 아이 이상	10,000,000	